

內 裝 材 的 研 究

운명희

<점검 1부 2파>

§ 1. 서 론

現代建築物은 國力의 伸張으로 高層화되고
多樣한 内部設備를 要하고 있어 복잡한 構造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資材들은 大部分이 可燃性物質
이기 때문에 일단 火災가 일어나면 内部施設이
燃燒는 勿論 많은 人命被害와 財產上의 被害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불상사를 事前に 防止하
기 為하여 可燃性物質(内裝材)은 建築法23條
2項 施行令 98條에 의거 앞으로는 不燃性材料를
使用토록 規制하고 있는 實情이다.

[註]의 火災위험을 決定하는 主要 三大要素
는 ① 建築內容物의 위험(내용물의 배치, 화재
화증 등). ② 構造의 耐火性. ③ 室內 마감재의
性質等이다.

이 연관성있는 三要素는 가끔 細密한 分別이
곤란하지만 적절한 탐구를 위해서는 서로 分別
이 되어야 한다.

§ 2. 内裝材의 定義.

人命安全을 위주로하여 室內마감재를 細密히

다룬 N.F.P.A No. 101의 "Life Safety Code"에
서는 "室內마감은 「플라스틱」, 木材, 기타 室內
마감재를 가진 벽, 고정 또는 可動式 간막이 또는
노출된 室內面의 材料와 거기에 接着하는 페
인트, 벽, 지붕표면재를 총 망라한다. 内裝은
裝飾品 또는 完全히 固定되지 않은 가구들과는
區別하여 建物自體에 固定된 材料도 포함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 3. 火災와 内裝材

建築의 火災被害過程을 보면 다음과 같이 区
分할 수 있다.

- a. 發火, b. 發煙, c. 延燒, d. 構造物의
崩壞,

위와같은 各段階에서 人命 또는 財產에 주는
被害程度가 각각 다르며 그 原因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發火가 될지라도 濃煙과 有毒 Gas의 發生만
적으면 곧 消火作業을 할 수도 있고 避難路도
찾을 수 있으므로 早期消火와 人命救出이 可能
할 것이다.

火災時 失火源으로 부터의 작은 불이 一定한
時間後에 爆發的으로 急激히 擴大하는 現象이

나타난다는 것이 判明되었고 그 때를 境界로하여, 室內의 溫度는 급격히 上昇하고 煙氣의 量도 顯著하게 많아져서 避難이 不可能하게 된다는 것이 判明되었다. 室內 溫度上昇의 狀態는

1. 室內 各種 材料의 發熱量과
2. 그 材料가 如何한 速度로 分解되어 燃燒되어 가는가 하는 「스피이드」의 두性能에 따라 많이 左右한다.

煙氣로 因한 危險性은 煙氣의 量과 煙氣의 毒性 둘을 들수 있는데 煙氣의 毒性은 아직 자세한 内容이 定量的인 基準으로서 制定될 段階에 이르지 못하고 煙氣의 量에 關하여는 材料固有의 發煙係數와 材料의 熱分解速度에 依하여 決定된다는 것이 判明되었다.

§ 4. 修裝用 防火材料.

構造體가 非耐火性인 構造部에는 特히 修裝材料의 耐火性여부에 따라 그 建築物의 耐火度가 決定된다. 따라서 可燃性 構造部에 接해있는 修裝材料의 裏面溫度는 260°C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屋內用 修裝材로는 有機質防火材料를 주로 쓰게 되며 屋外에서는 防火耐久性도 요구되므로 無機質防火材料가 많이 쓰인다.

• 有機質 防火材料

$(\text{NH}_4)_2 \text{HPO}_4$ 10%액 또는 $(\text{NH}_4)_2 \text{HPO}_4$ 5%와 H_3BO_3 5%의 혼합액등을 加壓 또는 常壓注入. 뿜칠. 도장등으로 처리한다. 不燃性 GAS發生, 水炭火作用으로 防火效果를 낸다.

• 無機質 防火材料

素材 自體가 不燃性이므로 다만 두께를 증가시킴으로써 防火性能을 높일 수 있다.

- 例] a. 石綿, 岩綿, 유리섬유판 등 6mm이상
b. 防火석고판 두꺼운 종이를 두장 겹쳐서 그 사이에 燈石膏와 섬유 紛末 혼합액을 주입진조. 두께 12mm이상

c. 도리조루판—木 섬유 60% 시멘트 40%

• 防火塗料

火災時 塗膜이 加熱되면 海綿狀 發泡로 인해 火焰을 차단하고 바탕재에 열전도를 감소시켜 260°C 이하로 수 時間을 지탱할 수 있는 性能을 갖는다.

• 기타.

경량骨材「시멘트」板 (25~30mm)

진공 「콘크리이트」板, 綱入유리板, 철판, 「알루미늄」판, 「스텐레스」판等.

※ 防火材料의 建築法上 分類

1. 不燃 材料.

火災時에 加熱에 對해 赤熱과 약간의 變形은 있어도 燃燒現象을 일으키지 않으며 發煙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 種類.

- a. 不燃石膏「보오드」—두께 12mm이상 (「보오드」紙대신 유리섬유, 석면紙를 쓰기도함).
- b. 石綿「슬레이트」(및 이것에 도장, 「프린트」한것).
- c. 岩綿吸音板, 保溫材.
- d. 유리섬유 保溫板, 保溫筒 (및 이것을 化粧한것).
- e. 石綿뿔칠(두께 10mm이상)
- f. 石綿 硅酸칼슘板.
- g. 炭酸「마그네슘」板.
- h. 亞鉛 鐵板(및 이것을 化粧한것)
- i. 鹽化비닐樹脂 金屬積層權(鹽化비닐 두께 0.1mm이하)

其他 以上의 보편적 材料로서 組合한 「보오드」類, 表面化粧材, 「파라이트」뿔칠材, 「알루미늄」, 石膏「보오드」, 複合材等이 있다.

一般的으로 不燃材料로서는 含有成分의 大部分(表面의 경미한 化粧材料를 除外시킨 程度)이 無機質分이라고 할것을前提로 한다.

2. 準不燃材料.

보통 火災時 10分間의 火熱(665°C)에 對해 防火上 약간의 被害가 있음을 인정하나 變形, 破

損, 연소성의 發焰이 없고 뒷면의 溫度가 350°C를 초과하지 않고 또 10分間의 加熱이 끝난뒤에 火焰이 남는시간이 30分을 초과하지 않을것.

• 種類.

- a. 石膏「보오드」(두께 9mm이상), 化粧석고 「보오드」, 石膏吸音「보오드」等도 있다.
- b. 木片「시멘트」板—비중 0.5이상은 두께 30 mm이상, 비중 1.2이상은 두께 12mm이상.
- c. 木毛「시멘트」板—比重 0.67以上 두께 15 mm以上, 木毛 45%以下의 것.
- d. 「펄프·시멘트」板(옛날에는 防火板)
- e. 鹽化「비닐」金屬積層板

以上과 같이 無機質 또는 金屬系의 材料를 主體로하고 이것에 定量의 有機質을 混入시킨 材料나 準不燃材料에 屬하게 된다.

3. 難燃材料.

보통 火災에서 500°C의 火熱에 對하여 6분 30초를 加熱했을때 防火上 有害한 變形, 破損, 연소성, 發焰等을 생기지 않는것.

• 種類.

- a. 合板, 섬유板等을 燐安液, 硫安液等에 浸漬시켜서 難燃處理하여 만든것.
- b. 石膏「보오드」(두께 7mm 以上)
- c. 유리섬유 含有量 52%以上의 FRP板.
- d. 「파티클·보오드」
- e. 「메라민」樹脂化粧鋼板等.

§ 5. 內裝材의 難燃性 試驗方法. (국립건설연구소 시행)

1. 難燃性 試驗은 難燃性의 級別에 따라 基材 試驗 및 表面試驗을 한다.

難燃性의 級別

難燃 1級—基材試驗 및 表面試驗.

難燃 2級—表面試驗.

難燃 3級—表面試驗.

2. 基材試驗.

a. 試驗體.

ㄱ. 試驗體의 材料 및 構成은 實제로 使用되는 것과 同一한 것으로 한다.

但, 表面에 붙은 塗裝 및 그外의 치장 마감層을 除外한 것으로 試驗할수 있다.

ㄴ. 試驗體의 個數는 3個로 한다.

ㄷ. 試驗體의 尺寸는 높이 $50 \pm 3\text{mm}$, 다른 두 면은 $40 \pm 2\text{mm}$ 로 하고 供試材料에서 採取한다. 材料의 두께가 이 尺寸보다 작은경우 供試材料의 부피 比重과 거의 同一하도록 하고 또한 可燃部分이 最大한 包含되도록 겹쳐서, 가는 鋼線으로 묶는다.

ㄹ. 試驗體는 制造後 通風이 좋은 室內에서 約 1個月以上 放置한 것을 35~45°C의 乾燥器中에서 120時間以上 乾燥한 後 「데시케이터」中에서 24時間以上 放置하여 養生한 것으로 한다.

ㅂ. 加熱爐

ㄱ. 加熱爐의 热源은 原則的으로 整電壓裝置를 備置한 電熱로 한다.

ㄴ. 爐內溫度를 測定하는 热電帶는 热接點을 爐壁內面에서 1cm 떨어져서 爐壁높이의 中央에 設置한다.

ㄷ. 加熱爐는 試驗體를 넣지 않고 加熱했을때 热電帶의 表示溫度(爐內溫度)가 $750 \pm 10\text{°C}$ 에서 30分以上 계속 加熱되는 것으로 한다.

ㄷ. 加熱 試驗

ㄱ. 試驗은 試驗體를 넣은후 20分間 加熱試驗 한다.

ㄴ. 爐內溫度의 測定은 KSC/1602에 規定하는 .075級以上的 精密度를 갖는 素線의 線徑 0.65 mm의 Ca 热電帶 및 實線記錄式의 電子管式 自動平衡記錄計로 한다.

ㄷ. 加熱은 미리 試驗體를 넣기 前에 爐內 溫度가 $750 \pm 10\text{°C}$ 로 20分以上 安定되도록 加熱爐를 조정한 後에 實施한다.

ㄷ. 判定

3個의 試驗體 각각에 對하여 實施한 加熱試驗에서 試驗體를 넣은 後의 爐內溫度가 미리 조정한 溫度(750 ± 10)보다 50°C 를 超過하여 上昇하

지 않을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3. 表面試驗

a. 試驗體

1. 試驗體의 材料 및 構成은 實際로 使用되는 것과 同一한 것으로 한다.

2. 試驗體의 個數는 3個로 한다.

3. 試驗體의 尺寸는 長, 寬, 각각 22cm로 하고 두께는 實際의 것과 同一한 것으로 한다. 但 두

께가 15mm가 넘을 경우 試驗體의 防火上性能 을 增大시키지 않는 方法으로 하고 또한 發煙의 程度를 減少시키지 않는 方法으로 그 두께를 15mm까지 減少시킬 수 있다.

4. 試驗體는 製造後 通風이 좋은 室內에 約 1個月以上 放置한 것을 35°~45°C의 乾燥器中에서 24時間 以上 건조한 후에 「데시케이터」中에 24時間이상 방치하여 養生한 것으로 한다.

나의 提言

點檢과 保險業務에 대하여

大田支部 洪 世 権

入社 8個月이란 짧은 期間이나마筆者が支部에서 勤務하며 保險業務와 不可分의 관계에서 點檢을 수행해 오면서 몇 가지 改善要素들을 發見하였는 바, 이에 對한 小見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火災保險一般物件料率表와 工場料率表는 現在 우리나라 實情에 符合 되도록 補完 또는 改正 되어야 한다.

단적 예로서 現在 一般物件 料率表에 기재되어 있는 構造級別 要율 적용은 한국 전물의 實態에 비추어 모순되는 點이 많다. 1급 전물의 경우 鐵骨鋸根 「콘크리트」조는 치진이 많은 日本의 경우에 合致되는 構造이고 우리의 實情에는 無理한 정도이다. 또한 벽돌조 石造 등의 경우 벽두께 30cm 이상은 현재 보기 힘든 형편이다. 따라서 過去의 현지 답사가 不可能하였던 때에 보험이 계약되어 매년 계속분으로 處理되어 오다가 現在點檢活動

에 의하여 완전히 구조가 把握되어 1급 전물이 2급전물로 하락되는 경우도 있어 업무에 차질을 빚는 수가 많다. 아울러 전물 内裝材比에 따른 면밀한 요율 적용도 등 한시 되고 있는 實情이다. 今年부터 工場物件이 추가됨에 따라 工場物件에 관한 構造級別, 生產品의 위험요소등급, 工程에 따른 工場의 檢別 火災 위험의 적정요율 적용, 機械가격의 不定性, 즉 운행감정가격 감정원감정가격 各會社의 장부價格等 각 경우에 따라 인정할 때 커다란 혼선이 빚어진다. 이러한 모든 要素들은 조속히 一元化 되어야겠다. 둘째 보험 가입자들의 방화설비 欲求를 축진시키기 위하여 과감히 현행 화재 보험의 할인 規定을 다국화 내지는 細分化 시켜야한다. 현행 할인 규정은 消防法보다 훨씬 上廻하는 수준이 되어야 할인 받을 수 있으나 現在各 전물, 특히 공장의 경우 소방법 규정이 未達하

는 곳이 대다수 이므로 消防法 수준에서 할인되어야 하며 현재 할인의 최소 단위가 5%로 되어 있으나 좀더 細分化 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工程의 工場을 예로 들어 보자.

1棟, 원자재 창고(철제, 화공약품등 착재. 2급전물. 방화시설없음 면적 200坪).

2棟, 塑性加工 工場(各種 成形機 위험품 없음. 방화시설 없음. (100坪)).

3棟, 切削加工 工場(各種 切削機 切削油등 위험품 사용. 3급전물. 소화기있음. 150坪)

4棟; 組立工場(作業員이 많음. 방화시설 없음. 2급전물. 200坪)

5棟; 전처리 및 도장공장(각종 「페인트」저장, 화기사용, 3급전물, 방재시설, 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250坪).

위의 5棟 工場의 火災保險 要율은 復合的 관계를 고려하여 면밀히 要율 적용을 해야한다. 현재 우리의 實情은 空地 할인과 가장 要율이 높은 것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實情이다. 타상에서 要율표만을 보아서는 정확한 要율을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이다.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속련된 지식과 다양한 첨

別表

경과시간 分	1	2	3	4	5	6	7	8	9	10
배기온도 °C	70	80	90	155	205	235	260	275	290	305

b. 試驗 裝置

ㄱ. 加熱爐의 主熱源은 原則的으로 整電壓裝置를 備置한 電熱로 하고 副熱源은 原則的으로 LPG Gas로 한다.

검 「리포오트」가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人的 交流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보험 「파아트」와 점검 「파아트」의 有機的 관계를 改善하여야 한다. 셋째, 특수건물, 공장 등의 이재조사는 當協會의 技術陣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當協會에서 취급하는 物件에 관한 한 防災에서부터 罷災시 보상까지는 완전한 責任을 저야 할 것이다. 많은 돈을 들여 의부기판에 의뢰하여 當協會의 主體性 손상 및 경제적支出을 보아서는 안된다. 넷째 현행 점검 「리포오트」는 좀더 補完되어야 하며 아울러 活用되어야 한다.

현재의 점검 「리포오트」는 所有者, 行政 관서에 통보 및 통계 資料를 산출하는데 難리하며 보험업무와는 거리가 먼 느낌이며 현행의 「리포오트」 조차도 보험 계약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끝으로 필자가 경험이 부족하여 具體的인 面을 관찰치 못하고 단순한 예에서 고찰하였으나 수많은 난점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技術職員들이 단순한 화재 예방 업무에서 탈피하여 좀더 넓은 領域에서 縱的 橫의로 보험업무를支援할 수 있는 機會와 與件이 주어졌으면 한다.

c. 加熱爐의 配氣溫度를 測定하는 热電帶 는 그 热接點 을 配氣한 것 으로 한다.

ㄷ. 加熱爐로
標準板(두께 1
cm의 0.8 石綿
페라이트板)을
使用하여 10分
間 加熱 表2에
기재된 配氣溫
度를 20°C以內
의 誤差로 재
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c. 集煙箱 子。

ㄱ. 發煙量(單位面積當 發煙
係數)을 測定
하기 위하여 集
煙箱子(內面의
寸數는 높이 1
m 다른 두변
을 1.4m로 한
다)를 設置하
고 煙氣의 교

반裝置 및 光量測定裝置를 裝置한 것으로 한다.

ㄴ. 光量測定裝置는 集煙箱子의 中央部分 天井
面에서 30cm 아래쪽에 位置해서 煙氣를 每分
約 1.5l의 流量으로 吸引하여 測定하는 裝置가 있
는 光源 및 受光計에서 煙氣粒子의 부착을 防止
하는 裝置를 備置한 것으로 한다.

d. 加熱試驗.

ㄱ. 受驗體의 受熱面의 寸數를 종횡 各各 18cm
로 하여 처음에는 副熱源으로 3分間 加熱한 後
다시 主熱源으로 加하여 難燃性의 級別에 따라
別表에 表示하는 加熱을 한다.

別表.

난연성급별	부열원 가열시간	주열원 시간
난연 1급	3分	7分
난연 2급	3分	7分
난연 3급	3分	3分

ㄴ. 配氣溫度의 測定은 外徑 1.6mm의 Ca + 가스」熱電帶 및 實線記錄式의 電子管式 平衡記錄溫度計로 한다.

ㄷ. 試驗開始前에 標準板을 使用하여豫備加熱을 한 後 裏面의 뚜껑을 열어 配氣溫度가 約 50°C로 漸어진 後 始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속하여 試驗을 하는 경우에는 標準板에 의한豫備加熱은 必要없는 것으로 한다.

e. 判定

다음의 경우를 合格으로 한다.

ㄱ. 試驗體 全두께에 걸친 용융試驗體裏面의 균
열(裏面균열門이 全 두께의 10/1以上되는 것에
限함)外 防火上 현저히 有害한 變形等이 없을것.

ㄴ. 加熱終了後 30초 以上 친열이 없을것.

ㄷ. 試驗結果의 配氣溫度曲線(記錄溫度計에 나
타난 曲線)은 加熱試驗中 標準溫度曲線(加熱爐
를 조정한 後의 各 經過時間마다 配氣溫度에 各
各 50°C를 加하여 이것을 연결하여 얻은 曲線을
말함을 넘지 않을것, 다만 難燃性 2級 또는 3級
에 있어서는 試驗을 開始하여 3分을 經過한 後

에는 다음 “근”의 條件의 範圍內에서는 넘는것도 合格으로 한다.

근. 配氣溫度曲線이 標準溫度曲線을 넘고 있는部分의 配氣溫度曲線과 標準溫度曲線으로 둘려진部分의 面積(單位 °C×分)이 難燃 2級에서는 以下級에서는 100以下, 3級에서는 350以下인 경우.

ㅁ. 다음式에 依하여 求한 單位面積當의 發煙係數(C_A)는 難燃性 級別에 따라 각各 表 4의 數值를 넘지 않을것.

$$C_A = 240 \log \frac{I^o}{I}$$

다만 I^o 는 加熱試驗 開始時의 光의 強度(單位 : Lux) I 는 加熱試驗中의 光의 強度의 最低値(單位 : Lux)이다.

別表

難燃性의 級別	單位面積當 發煙係數 (C_A)
難燃 1 級	30
難燃 2 級	60
難燃 3 級	120

외국 시험 방법 (인명 피해연구)

1. 「터널 · 테스트」(NFPA Mo. 225)

建材의 火災危險等級 決定試驗 「테스트」用試驗體를 建物에 實際使用할때와 같은 方法으로裝置하여 幅18" 長 25ft인 加動式 Top Panel아래놓는다. Fire End에 있는 點火用 불꽃은 一定한量으로 조정되어 火焰 확산은 옆의 유리창으로 관찰된다.

火焰 확산은 石綿, 「시멘트」板을 “0” Red Oak를 “100”으로 잡은 「스케일」上에서 等級을 定한다.

“100”以上되는 울을 화염확산의 Red Oak보다 빠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연기의 농도는 光電管으로 測定되어도 溫度增加에 따라 試驗體가 流出하는 燃料量은 Thermo Couple에 依해 記錄된다. 室內의 溫度 및 습도

는 어떤 材料가 습도에 따라 燃燒性이 큰 變化를 유발할 때 自動으로 조정된다. 얻어진 結果는構成物의 機能, 災의 形態, 裝置方法, 보존 時間等이다.

2. Factory Mutual Test

부드러운 石綿板으로 안을 幅 14ft, 길이 20ft, 높이 12ft의 構造物속에서 試驗體는 板에 직접 불이거나 1inch×2inch 목 모조작에 웃칠한다.

點火源으로 3/4파운드의 「알코올」과 7 1/2「파운드」의 木材를 구석에 놓는다.

Thermo Couple을 마루에서 5ft 6in 위의 호흡선 温度를 測定한다. 이 實驗에서 點火된 불은 마루위 호흡선에서 135°F에서 155°F의 温度를 낸다. 温度가 높아지는것은 內裝材가 타기 때문이다. 이 試驗은 温度가 記錄되고 煙氣測定은 안된다.

試驗 結果를 보면

재료	호흡선 온도
연 石綿板(비가연성 「화이버 · 인 슬레이션 · 보오드」 방염 「페인트」 칠 표면 표면처리 안된것(공장내 수성 「페인트」 처리 제외) 석판 벽 판	135~155°F 215~270°F 1450 120~155

3. 기타.

- ㄱ. Forest Products Laboratory Test.
- ㄴ. British Tests
- ㄷ. Los Angeles School Fire Tests
- ㄹ. St. Lawrence Burns.
- ㅁ. Small Scale Test.

§ 6. 內裝材의 種類. (국립건설연구소)

1. 不燃材

- ㄱ. 유리섬유 석고판, ㄴ. 「아스칼」 천정판,

ㄷ. 「바움라이트」 근. 「파시·보오드」 ㅁ. 「뉴우·컬러·보오드」 ㅂ. 암면 「보오드」 (이상은 천정평판 제품임). ㅅ. 석면 접착제 「시멘트」, ㅇ. 「스프레이·인슐루브」 ㅈ. 석면 「텍스」, ㅊ. 석면 뿐칠 「텍스」, ㅋ. 「파라이트」, (이상은 보온 시공 재료임) ㅌ. 내장용 도장재 「알파부너 「코우트」.

2. 準 不燃材

ㄱ. 「시리카·톤」, ㄴ. 「파시 보오드」 B. (이상은 천정 평판 제품임), ㄷ. 「뉴우·텍스」 근. 석면 보온재, ㅁ. 석면 「텍스」 ㅂ. 석면 뿐칠 「텍스」, (이상은 보온시공재료임), ㅅ. 암면(단열재임)

(위 不燃, 準 不燃材는 국립 건설 연구소에서 내장재시험을 거친 상품명임)

※ 内裝材의 관계法規.

소방법 11조, 시행령 9조, 17조, 28조, 33조, 34조, 시행규칙 7조, 8조, 9조, 12조, 19조, 3조 등.

건축법 2조, 17조, 시행령 2조, 91조, 96조 등이 있음.

§ 結 論

소방법, 건축법 등에는 不燃材, 準 不燃材 難燃材에 따라 法의 適用問題가 따르고 있으므로 인해 건축법에 이를 분류하여 놓고 있으나 热전도 등에 따른 대비가 없고 제품의 경정품을 관장하여 인정하는 기관이 없다.

建築法 2條 11號에서의 不燃材料라 함은 「콘크리트」,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루미늄」, 유리, 「모르타르」 회, 기타 유사한 不燃性의 材料를 말한다.

施行令 2條 9號에서의 “準 不燃材라 함은 木毛 「시멘트」板, 石膏 「보오드」, 기타 이와 유사한 不燃性의 材料로서 建設部長官이 定하는 基準에 鑑合한 것을 말한다. 또한, 行政令 2條 10號에 玆

는 “難燃材料라 함은 難燃合板, 難燃石膏판, 난연 「플라스틱」판 기타 이와 유사한 難燃性의 材料로서 建設部長官이 정하는 基準에 適合한 것을 말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일본規定을 보면 材質과 두께 및 商品 이름까지도 分類整理되고 있다.)

國立建設研究所에서는 日本規定을 導入하여 基材試驗 및 表面試驗을 통해 各種材料의 難燃性을 檢討, 分類하고 있으나 難燃性의 會社로부터 生產된 製品中 合格 分類된 製品이 74년 말 現在 10여개 뿐이다. 이들 製品을 보면 吸音問題를 外面한 것이라든지 質感이 좋지 않아서 「호텔」등 高級스러운 곳에 不適合한 것이 全部이다. 判定에 合格한 製品은 冊으로서 公式的으로 인정 품목으로서 分類되어 나오는것이 아니고, 檢查한 試驗體 自體만 合格이고, 同質의 상품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實際로는 檢定기관이라 보기 어렵운 실태이다.

이로 인해 内裝材不燃化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安全檢查對象인 기존建物의 거의 대부분이 可燃材인 内裝材를 使用한 實情이며 内裝材 不燃化 規定이 오는 78年 6月 30日까지 경과규정이 있으나 新築建物의 内裝材 不燃化 問題가 時急하므로 不燃材가 하루빨리 定立되어 不燃材 發達에 박차를 加할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우리 協會는 火災豫防을 위한 安全點檢機構로서 不燃材에 對한 研究가 時急하며 協會自體로서만의 인정 製品이라도 선정하여 建物主 및 製造業者를 선도하는 方向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끝~

〈参考문헌〉: NFPA Hand Book

防火建築材料總覽

監修: 星野昌一

建築防火

堀内三郎 著.